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09,776,713	27,293,301
일반회계	800,296,458	24,008,894
특별회계	109,480,255	3,284,408
공기업특별회계	76,221,370	2,286,641
상수도사업	22,598,351	677,951
하수도사업	53,623,019	1,608,691
기타특별회계	33,258,885	997,767
의료급여기금	2,374,304	71,2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317,283	39,518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55,716	7,67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271,189	8,136
수질개선관리	8,395,814	251,874
농공지구조성	3,613,690	108,411
중소기업육성자금	5,903,318	177,100
농업발전기금	11,127,571	333,82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335,411천 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2,0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